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 및 특정 의무 명시(안 제42조의2 제1항)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사기밀 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함.

나.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2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보전요청을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불승인 시 사법경찰관은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도록 함.

다. 보전요청 등 사유 소명 요구(안 제42조의2 제3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신청(긴급보전요청 승인 신청 포함), 검사·사법경찰관의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신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취소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여 보전요청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라.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등의 사건기록 편철 규정(안 제42조의2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및 검사·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한 보전요청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 관련 기록이 충실히 관리되도록 함.

마. 보전조치 결과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 통보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5항)

보전조치 결과가 해당 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 신청을 한 주체가 아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보전요청 또는 신청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검·경 간 정보공유를 강화함.

바. 사법경찰관의 직권 보전요청 취소 시 사후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제6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 및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사. 보전요청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제7항)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할 때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할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 제2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한 때에는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그 요청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

및 보전 기간 연장 신청, 동조 제2항에 따른 긴급보전요청의 승인 신청, 동조 제3항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 및 동조 제6항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 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또는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15조의2 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 긴급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검사가 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을 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와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보전요청서 사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할 때에는 보전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할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 제2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한 때에는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그 요청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 및 보전 기간 연장 신청, 동조 제2항에 따른 긴급보전요청의 승인 신청, 동조 제3항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 및 동조 제6항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 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또는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15조의2 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 긴급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검사가 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을 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와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보전요청서 사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제형사과	
연 락 처	(02)2110-3297